

부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346199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1,055,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2021.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2. 3. 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4.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2021. 4. 9. 접수 제292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D조합(이하 'D'이라 한다)과의 농산물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11. 6. 원고와 ① 보험금액 1억원, ② 피보험자 D, ③ 보험기간 2020. 11. 6.부터 2021. 11. 5.까지의 각 조건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2021. 4. 8. 피고 C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그 다음날 그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21. 7. 26.경 D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야기하였고, D이 2021.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0,671,544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1. 10. 8. D에 보험금 81,055,778원(= 원금 80,140,258원 + 지연이자 915,52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81,055,778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9.부터 2021. 11. 7.까지는 연 6%, 2021.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나.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피고 C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행에 2011. 6. 24. 채권최고액 1억 7,040만원의, 2019. 4. 11. 채권최고액 1억 4,580만원의, 2019. 7. 3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2021. 3. 3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그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는 2021. 9. 8. 청구금액 5,600만원의,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는 2021. 9. 9. 청구금액 6,017만원의, H는 청구금액 23,028,840원의, I카드는 2021. 11. 19. 청구금액 13,820,398원의, J카드는 2021. 11. 24. 청구금액

9,531,874원의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다수의 채무와 채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B는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직후인 2021. 7. 26.경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B는, 앞서 본바와 같은 다양한 채무관계, 채무액 등에 비추어,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고도 5개월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 C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